

2024년도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 재공고

- '24.10.21(월)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-

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근거하여, 아래와 같이 산업기술보호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1 신청(추천)자격 및 포상규모

□ 신청(추천)자격

- 3년 이상 국내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,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」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 - * 재포상 금지 :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(수여일~추천일) 장관표창 수여 금지
-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기술개발,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, 정책 활성화 및 제도 확산, 인식 제고 등 산업보안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(개인 및 단체)

□ 포상규모

구 분	대 상	규 모
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	00점

* 포상규모는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2

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□ 선정절차 및 일정

구 분	내 용	일 정
포상 공고	포상계획 공고.신청접수	10.10(목)
신청서 접수 마감	신청서 접수 마감	10.29(화)
서류 확인	제출서류 확인(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확인)	10.30(수)
추천심의위원회	포상대상자 추천심의 실시	11.5(화)
공적심사	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	11.11(월)
결과 확정	결과확정 및 공개검증(필요시)	11.15(금)
시상식	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內 시상	11.26(화)

*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□ 심사기준

심사항목	세부사항
산업기술보호 활동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보안분야 심사·강의 및 교육 실적 ○ 산업보안체계 구축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조직, 시스템 도입, 관리규정 수립, 인증 취득 등 ○ 산업보안분야 관련 학회 및 연구회 활동 실적 ○ 자격, 특허출원 취득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공인·산업보안 전문자격 취득, 특허·실용실안 등록 등 ○ 기타 산업보안분야 활동실적
인식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보안분야 관련 행사 참여 및 활동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·민간 행사에 대한 추진, 발표, 참여 등 ○ 산업보안분야 저술·논문·기고 실적 ○ 산업보안분야 홍보활동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행물·영상물 발행·제작, 기술유출방지 우수사례 제공 등 ○ 기타 산업보안분야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실적

기술유출방지 기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보안분야 정책 개발 및 발전 기여도 ○ 산업보안분야 제도개선 기여도 ○ 산업보안분야 진흥 및 지원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·기관의 기술보호 활성화 기여 등 ○ 산업보안 경쟁력 제고 기여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안관련 신기술·신제품 투자, 기술개발 실적 등 ○ 산업기술유출 징후 신고 실적
공적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적 달성 난이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성, 노력, 전략, 열악한 환경 조건 등 ○ 사회적 책임 및 기여도
공적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적기간을 차등화 하여 점수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등급 : 10년 이상 - B등급 : 8~10년 미만 - C등급 : 6년 이상~8년 미만 - D등급 : 4년 이상~6년 미만 - E등급 : 4년 미만

* 동점일 경우 기업·기관·단체, 개인(고령자) 순으로 우선 선정

3

신청 및 접수방법

□ 신청기간 : '24. 10. 10(목) ~ 10. 29(화) 18시까지

□ 신청서류

○ 소정양식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*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: www.kaits.or.kr

○ 제출서류

-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신청서 1부

- 공적조서 1부

-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*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결과는 포상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지

□ 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(hgseo@kaits.or.kr)
- 접수 및 문의처

주 소	(06732)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(서초동 1355-26)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경영기획팀, 6층
연락처	02-3489-7012, 7014 (포상 신청.접수 담당자)

□ 관련 법률 및 규정

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- 「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

1. 표창대상

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, 일반국민(외국인 포함), 기관·단체 등

2. 자격기준

가. 개인표창: 표창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

* 단, 창안상,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1) 공무원표창: 실 근무기간 3년 이상

*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(청원경찰, 별정우체국 포함)

*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
2) 국민표창: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

나. 단체표창: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

3. 추천제한

가. 공무원표창(공적상·창안상·협조상에 적용)

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도 적용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

* 창안상,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- 2) 휴직중인 자
- 3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
(정부포상지침 중 3.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), 수사 중인 자
- 4)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- 5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6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7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

-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 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나. 국민표창(공적상·창안상·협조상에 적용)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)
- 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6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7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8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다. 단체표창(공적상·협조상에 적용)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
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
6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9) 기타 사회적 물의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·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
·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
* [공정위 홈페이지\(www.ftc.go.kr\)]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
· 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- 202 - 7537)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·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4. 장관표창 취소

가.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
나.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
다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